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경유자동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해준다
는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나요?

민원내용 인터넷으로 LPG 차량을 검색하다 우연히 기사에 환경부에서 오래된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무료로 개조해준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제가 사는 지역이 광주광역시입니다. 이 정책이 광주광역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2001년식 무소차량입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 대해 동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인증을 득한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예산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 의무화 대상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서를 발부토록 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밀소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 엔진 장치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고,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 등 관련 준수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인증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법령정책 / 주요정책 / 대분류(대기보전) / 중분류(운행차관리) / 소분류(운행차 저공해화)에 배기량 및 엔진종류별로 게재되어 있으며,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000(wwwaea.or.kr), 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관련 대응방안?

대구도시철도 대공원 역사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는 '12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하여 '11년 6월에 관련법에 의거 BSFN(Bacillus System For Nature) 고도 처리공법으로 시설 개선을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지하철 오수처리시설은 대구시에서 향후 수십년 이용 승객 증가를 고려하여 크게(처리 용량 130톤/일) 설치되어 있고, 실제 오수량은 일일 10톤 미만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에 비해 실 발생 오수량이 현저히 적어 원수의 BOD가 170~180mg/L 정도로 아주 낮아 처리공법 개선으로는 강화된 방류수수질의 질소(T-N)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용량보다 실제 발생 되는 오수량이 현저히 뜻미치는 경우 발생되는 오수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와 같은 경우 실제 발생되는 오수량(객관적 증빙자료)을 기준으로 처리용량 변경 신고가 되는지요?

A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처리용량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말합니다.

다만, 당초 법 개정취지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다량 발생되는 오수에 대하여 적정 관리하고자 50톤/일이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 것으로서, 당초 설치된 시설용량에서 건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변경되었거나, 당초 시설용량보다 오수 유입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는 경우에 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이때, 실제 발생되는 일 최대오수량(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을 기준으로 “처리용량”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002 폐플라스틱 드럼통의 표면을 세척한 후 털지 과정을 거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털지시설(가성소다, 유기용제 등 사용)은 2m³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제 생각에는 금속 제품이 아닌 플라스틱을 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털지시설은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출시설 인·허가는 개별 배출시설별로 분류되므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분류에도 불구하고, 개별시설이 1)~28) 까지의 배출시설에 해당된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규정에 따라 규모 이상인 털지시설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계획서 제출과 평가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2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이행계획서는 BAU와 배출허용량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감축계획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2011년도 투자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으로 제출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11년 2월, 5월, 9월 등 투자가 완료되어 이미 감축활동이 되고 있는 부분이며 이는 또한 2012년에도 계속해서 감축활동으로 이어지고 감축량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들입니다.

2.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향후 실적평가를 실시할 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실적 평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도 투자된 감축활동을 2012년도

목표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감축량은 2012년에 발생한 감축량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발생한 감축량에 대해서는 조기 감축 여부를 인정받아야 감축분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행계획서는 업체의 자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향후 이행실적 평가시 이행계획에 따라 감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업체의 목표량을 달성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용보관산출량을 보관야적장 이외 보관이 가능한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위탁처리 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 할 때 허용보관량을 산출한 그 장소(허가 받을 때 건설폐기물 보관야적장으로 지정한) 이외의 공장부지내 보관하여도 되는지요? 만일 허가 받을 때 건설폐기물 보관야적장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허가 받을 때 원석건설폐기물, 40m이하, 25m이하, 석분 쓰레기 등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당연 하지만) 작업장 내 아무 곳이나 허가 받은 허용보관량 만큼을 보관할 수 있는가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호에 따라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